

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

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5. 01. 19.

개정 2022. 12. 13.

개정 2025. 02. 18.

개정 2026. 01. 23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(이하‘장애인체육회’라 한다.)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각종위원회로 전문체육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한다. <개정 2022. 12. 13.>

제2조(목적)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조에 의한 전문체육 사업과 운영 및 업무 등 전문체육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, 연구,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종합적 경기력향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국제 및 전국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스포츠과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
4.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5. 가맹단체 육성, 관리, 평가에 관한 사항
6. 전국체전 선수단 훈련 및 참가 임원,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
7. 선수단 강화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8.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의 발굴·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9. 실업팀 운영, 평가에 관한 사항
10. 기타 전문체육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 2. 부위원장 1인
 3. 위원 9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전문체육 사업관련 직원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5. 2. 18.>

- ②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.<신설 2025. 2. 18.>
 1.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 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<신설 2025. 2. 18.>
 2.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3.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신설 2025. 2. 18.>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2025. 2. 18.>

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<개정 2026. 01. 23.>
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회의소집)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10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.<개정 2025. 2. 18.>

제11조(수당)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사무처리)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장애인체육회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13조(긴급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

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4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준한다.

부 칙(2015. 1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12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2. 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1. 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